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홍보전략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22
FAX 044-287-6029

발행일 2020년 4월 16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ang@kli.re.kr)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고용유지대책으로는 기존에 시행되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정책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실업자의 45.6%만이 수급할 수 있었다.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많은 데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 때문에 다음에 소개하는 둘째와 셋째 정책이 급박하게 도입되었다. 둘째,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일시 부활시켜 운영하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와 셋째 대책은 월 50만 원씩 2~3개월 지급되며, 예산상의 제약도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위 세 번째 대책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본 급여의 수급대상을 특고와 프리랜서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고용감소 최소화 정책과 소득단절 대응 정책을 검토한다. 정부 정책은 기존 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강구된 정책을 도입하여 시급한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고용유지대책으로, 고용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 지원대책으로, 무급휴직, 해고, 또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소득이 끊어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고용지원정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업지원대책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의 고용도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범위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 가계소득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계지원대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고용유지대책

1. 기존 제도 확장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로서,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재고량의 증가나 매출의 감소로 증빙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확장하였다. 첫째, 경영악화를 증빙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재고량 50% 이상 증가나 매출액 15% 이상 감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원금액을 최대 90%까지 인상하였다. 즉 기업은 인건비의 10%만 부담하면서 휴업·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인상은 특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2차례에 걸친 인상으로 지원액 결정은 다소 복잡하게 되었다(표 1 참조). 2020년 3월 27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장이 이미 22,360개소에 달해 2019년 지원 사업장 1,514개소 대비 15배 증가하였다.¹⁾

고용유지지원금은 프로그램성 사업이 아니라 범정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늘어나더라도 지원요건에 부합하면 당초 예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증액된 지원금액은 6~7월까지만 적용되는데, 이때까지 고용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이러한 지원금 인상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주가 지급한 인건비 대비 지원금액

	평소	2, 3, 7월	4, 5, 6월
우선지원대상기업	2/3	3/4	9/10
그 외	1/2	2/3	2/3~3/4

주 : 1) 여기서 우선지원대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제조업의 경우는 500명 이하, 건설, 일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에서는 100명 이하
2)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기간이 3.15~9.15.
3)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 원
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841로부터 필자가 재구성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체의 경영에 부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지원기관 연장과 지원금 증액

1)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0841

이 되어 저소득근로자의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8년에 도입되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지원되는데,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보조금이 지원된다. 추산 인원은 230만 명이다. 당초 제도의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9만~11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표 2〉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금액

(단위: 만 원)

	당초 지원금액	추가 지원금액
5인 미만 기업	11	+7(18)
5~9인	9	+7(16)
10인 이상	9	+4(13)
예산액	2조1,647억 원	+4,964억 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짐.

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39

2. 개선과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평소에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경제위기 시마다 빛을 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인 미만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추가 지원기간을 올해 6월 또는 7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는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소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확대되었고, 회복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올해 내로 고용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이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대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고용유지 조건을 부과하였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기업을 지원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국가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이 임원의 상여금과 주식배당을 지급해서 비판을 받은 경험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본 결과이다. 최근 IMF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번 경제위기를 넘겨야만이 향후 빠른 회복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기업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① 고용유지와 ② 임원상여금/주식배당/자산주매입 제한을 적시하였다.²⁾ 우리나라의 경우 휴업/휴직을 시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도 똑같이 경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검토가 필요하다. 임시 증액된 고용유지지원 금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원래 편성된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렸으나 향후 고용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국가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편성된 막대한 금액을 고려할 때 우리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훨씬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소득단절에 대한 대책

1. 기본적인 제도

실업급여

실업보험제도는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임금노동자가 실직하였을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단, 1일 66,000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의 하한액이 적용된다.³⁾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45.6%이다(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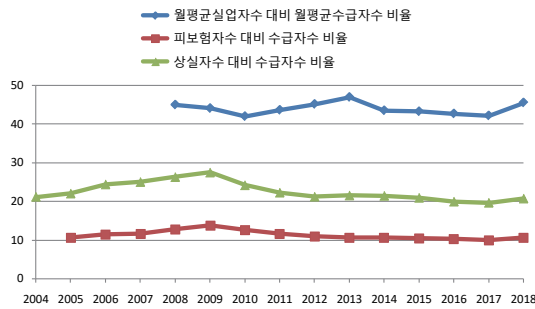
IMF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번 경제위기를 넘겨야만이 향후 빠른 회복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45.6%

2) <https://blogs.imf.org/2020/04/01/economic-policies-for-the-covid-19-war/>

3)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지급하던 것을 30일씩 연장하여 120~270일로 확대.

[그림 1] 실업급여 수급률(2004~2018)



주: 1) 월평균실업자수 대비 월평균수급자수 비율 = $\frac{\text{해당 연도 실제 수급자수} \times \text{월평균수급일수}}{365 \div \text{월평균실업자수}} \times 100$
 2)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 = $\frac{\text{해당 연도 수급자수}}{\text{전년도 말 피보험자수와 현재 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평균}} \times 100$
 3) 상실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 = $\frac{\text{해당 연도 수급자수}}{\text{해당 연도 상실자수}} \times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9), 「2018 고용보험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시계열 보정 후).

림 1).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구직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전면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지난 2월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신규 수급자수는 12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⁴⁾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에서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2배 폭증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⁵⁾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용위기가 미국에 비해서 덜 하기 때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있는 사람 중에도 실질적으로는 실업자(구직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인다. 신규취업자 중에 직전 상태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인 사례가 흔하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자 비율이 낮은 일차적

[표 3]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2019)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법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근로자 수(1,000명)	6,799	3,249	3,781	13,528
취업자 내 비중(%)	24.9	11.9	13.8	49.4
임금근로자 내 비중(%)		15.8	18.4	65.8
적용대상 근로자 내 비중(%)			21.8	78.2

주: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 8(시계열 보정 후).

인 이유는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65.8%이다(표 3 참조). 15.8%는 공무원, 교원 등 법적 적용제외자이고 18.4%는 적용대상이지만 미가입하고 있는 실질적 사각지대이다.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78.2%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업보험제도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득대체율과 수급기간을 확대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해 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

4)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수급요건 다소 완화되어 이전년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https://www.keis.or.kr/user/bbs/main/302/2117/bbsDataView/45737.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5) <https://www.nytimes.com/2020/04/02/world/coronavirus-live-news-updates.html#link-27204eca>

지난 4월 2일 미국 노동부는 2주 사이에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보고함.

무급휴직노동자 11.8만 명,
특고·프리랜서 14.2만 명이 혜택

2. 기존 제도 확장 또는 재도입⁶⁾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지원정책이라기보다는 고용서비스정책이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가 된다. 2019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점검을 거쳐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다. 2020년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⁷⁾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구직기간 중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이 폐지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금액이 적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근본적 한계 상황에서 구직활동 확인을 느슨하게 하면서⁸⁾ 소득지원 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원내용도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로 확대하였다. 추가경정예산으로 50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825억 원을 사용한다. 저소득층 7만 명과 청년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임시 처방

무급휴직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⁹⁾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자, 흔히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노동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 원의 국비와 346억

원의 지방비를 합하여 총 2,34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8만 명, 특고·프리랜서 14.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확인서 또는 특고·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 인원의 규모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 무급휴직노동자가 몇 명이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8년에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조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는 넓게 잡아 220만 명에 달한다(정홍준, 2019). 이들 중 지원 신청자는 14.2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월 50만 원씩 2개월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제도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입은 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노동자 중에서 최대 75% 정도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머지 25%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전전하고 있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이 지원정책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넘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해야 할 것

6) 코로나19 사태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제도는 본래 무급이지만 1일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정책을 도입함. 또한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정책도 있으나 이 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음.

7)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구직기간 중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수 있음.

8) ① 2단계 직업훈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음. ② 구직활동 이행점검을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로도 진행할 수 있음. ③ 임금노동 일자리를 연두에 두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를 연두에 두고 종사분야 전문성 향상이나 고객확보 노력까지 구직활동 범위로 폭넓게 인정.

9)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4 참고.

4. 개선과제

두 가지 방식의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정책은 임시적인 정책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긴급실업수당’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긴급실업수당이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하여 정부가 급히 소득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문제는 이 지원제도가 실업급여가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여전히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 실업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용불안과 소득저하로 고통받고 있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하였으나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급감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일단 국세청이 작년도 소득자료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지원 창구에 제공하고, 본인의 신청과 소명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긴급실업수당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둘러보면서,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이나 구직촉진수당 제도입은 우리나라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급하게 마련한 프로그램성 정책이 갖는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준비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조금만 서둘렀더라면 이번 위기를 넘기

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기존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다. <표 3>에서 보면, 비임금근로자로 법적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 이들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려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¹⁰⁾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발전적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실업부조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464)으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상 두 법률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이후 또 다른 고용불안정 사태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고용유지대책으로는 기존에 시행되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정책이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이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하였으나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로 대상을 확대

10)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6373, 한정에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예술인도 포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대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용유지 조건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정책은 임시적인 정책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긴급실업수당’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하였으나 실업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이렇게 임시변통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보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과 저소득구직자 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우리 제도를 돌아보면 공백이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다. 첫째, 전술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자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위험을 떠안을지라도 목돈을 벌 기회를 잡으려는 사업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취업자를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부과하는 소득보장제도도 개혁해 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상병수당제도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OECD(2020)가 서둘러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감염이나 격리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한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참고문헌

- 정흥준 (2019), 「특수형태근로자 규모 추정 및 새로운 접근방법」,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한국노동연구원.
- OECD(2020), "Supporting people and companies to deal with the Covid-19 virus: Options for an immediate employment and social-policy response," ELS POLICY BRIEF ON THE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KLI EMPLOYMENT
& LABOR
BRIEF